

## <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변경사항 안내>

현 행	변 경
<p>&lt;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: 본인확인 방법(예시)&gt;                      -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(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,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)</p> <p>-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,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</p>	<p>&lt;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: 본인확인 방법(예시)&gt;                      -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(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,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)</p> <p>-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,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</p> <p><b><u>-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시 전자서명* 또는 본인확인서비스**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</u></b>                      * '전자서명법'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)                      **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 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</p>
<p>-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,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</p>	<p>-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,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</p>